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 14 선고 2020가단5315690 판결 [구상금 등 청구의 소]

전 문

원 고 기술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텍
담당변호사 조한직, 김윤석

피 고 1. 주식회사 A

2. B

3. C

변 론 종 결 2021. 12. 3.

판 결 선 고 2022. 1. 14.

주 문

1. 피고 주식회사 A,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50,772,346원 및 그 중 149,822,616원에 대하여 2020. 12. 4.부터 2021. 8. 28.까지 연 8%, 그 다음날부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 B과 피고 C 사이의 2020. 6. 29.자 증여계약을 162,758,155원 한도 내에서 취 소하고, 피고 C은 원고에게 162,758,155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 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아래와 같이 3건의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피고 B은 피고 회사의 대표자로서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부담하는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보증일자	보증번호	보증금액	보증기한
2012. 10. 17.	D	100,000,000원	2013. 10. 17.(후에 2020. 9. 18.로 변경)
2016. 9. 19.	E	19,000,000원	2017. 9. 19.(후에 2020. 9. 18.로 변경)
2016. 9. 19.	F	28,500,000원	2017. 9. 19.(후에 2020. 9. 18.로 변경)

나.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원고로부터 발급받은 신용보증서를 제출하고,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2012. 10. 18. 100,000,000원을, 2016. 9. 20. 20,000,000원을, 2016. 9. 20. 30,000,000원을 각 대출받았다.

다. 피고 회사는 위 대출금 지급을 연체하여 2020. 8. 20.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중소기업은행은 원고에게 신용보증사고 발생을 통보하였으며, 원고는 2020. 12. 3. 중소기업은행에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149,822,616원(= 101,447,483원 + 19,354,320원 + 29,020,813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라.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는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 피보증인과 연대보증인이 원고에게 ① 보증채무이행금액과 이에 대하여 이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원고가 정하는 율과 계산방법에 의하여

산출한 손해금, ② 보증채무 이행에 든 비용, ③ 보증채무이행으로 취득한 권리의 보전, 이전 및 행사에 든 비용, ④ 미납한 보증료, 연체보증료, 추가보증료 및 성과보증료, ⑤ 위 각 비용에 대하여 지급일부부터 상환일까지 원고가 정하는 율을 곱하여 산출한 지연배상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고, 원고의 대위변제일인 2020. 12. 3.부터 현재까지 ‘원고가 정하는 율’은 연 8%이다.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추가 보증료는 575,840원(= 390,410원 + 74,170원 + 111,260원)이고, 채권보전을 위하여 지출한 법적절차비용 중 미수금은 373,890원이다.

마. 피고 B은 2020. 3. 9. 서울 성동구 G빌라 H호를 매도하였는데, 매수인으로부터 잔금 9억 원을 2020. 6. 29. 지급받기로 하면서 같은 날짜에 위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300,000,000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피고 B은 2020. 6. 29. 매수인과 피고 B의 모인 피고 C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도록 함으로써 피고 C에게 임대차보증금 300,000,000원을 증여하였다(이하 ‘이 사건 증여’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회사, 피고 B에 대한 구상금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회사, 피고 B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연대하여 원고에게 150,772,346원(= 대위변제금 149,822,616원 + 추가 보증료 575,840원 + 법적절차비용 373,890원) 및 그 중 대위변제금 149,822,616원에 대하여 대위변제일 다음날인 2020. 12. 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최후 송달일인 2021. 8. 28.까지 약정지연배상금율인 연 8%,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C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성립 여부

1)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임을 요하지만,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법률관계에 터 잡아 채권시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76426 판결).

2)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증여 당시 가까운 장래에 원고의 구상금채권이 발생하리라는 점에 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고, 실제로 가까운 장래인 2020. 12. 3. 원고의 구상금채권이 발생하였으므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구상금채권은 이 사건 증여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피보전채권이 된다.

① 원고가 이 사건 증여 이후인 2020. 12. 3. 중소기업은행에 대위변제함으로써 구상금채권을 취득하였지만, 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은 이 사건 증여계약 전에 이미 체결되어 있었다.

②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증여 당시 책임재산이 될 수 있는 부동산을 소유한 바 없는 것으로 보인다.

③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증여 후 2개월이 지나지 않은 2020. 8. 20.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대출금 연체를 이유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1)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인 ‘채권자를 해하는 법률행위’는 채무자의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로서 그로 인하여 채무자의 재산이 감소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는 것을 말하므로, 이러한 사해행위는 문제된 처분행위로 말미암아 비로소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는 경우에도 성립한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5다6808 판결 등 참조).

2) 앞서 본 인정사실에다가 갑 제1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증여 당시 피고 B은 부동산 처분 대금 300,000,000원 이외에 별다른 재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던 반면, 원고에 대한 채무 이외에도 I캐피탈 등에 대하여 합계 79,956,000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B은 유일한 재산이었던 부동산 처분대금 300,000,000원을 모인 피고 C에게 증여한 이 사건 증여로 인하여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증여는 원고 등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거나 해하는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인 피고 B의 사해의사도 인정되며, 수익자인 피고 C의 악의는 추정된다.

다. 피고 C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 C은 이 사건 증여가 사해행위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선의라고 주장한다.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할 경우 그 사해행위 또는 전득행위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에 의하여야 하고, 채무자나 수익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그 사해행위 또는 전득행위 당시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다5710 판결 등 참조).

피고 C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피고 C이 이 사건 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알지 못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 C의 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의 범위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자신의 채권액을 초과하여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고, 이 때 채권자의 채권액에는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이자나 지연손해금이 포함되는 것인바(대법원 2001. 9. 4. 선고 2000다66416 판결 등 참조), 사해행위인 이 사건 증여는 원고의 피보전채권액인 162,758,155원(= 150,772,346원 및 그 중 149,822,616원에 대한 2020. 12. 4.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인 2021. 12. 3.까지 연 8%의 비율로 계산한 돈)의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 C은 원고에게 162,758,155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노미정